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금체납에 관한 사항의 공개 근거 마련〉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5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8.
3. 회부연월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으로 정하는 특정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의 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 공직자의 세금 체납 관련 사실이 등록 및 공개되고 있지 않아 체납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 한편 세금 체납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위 공직자의 체납사실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세금 체납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공무집행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의 세금 체납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체납사실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인적사항 및 체납사실(체납액·압류·압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실을 말한다) 등을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 이전에 체납자 등에 대하여 체납사실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③ <u>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④ <u>체납사실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 정보통신망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검토의견

개정안은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공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세금 체납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공직자 등의 세금 체납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자 등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대국민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있는 집행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법의 신설 등 별도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적 대안을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1조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에 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

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본칙에서는 재산의 등록과 공개(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제2장의2),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제3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등(제4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신분 또는 직위를 전제로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한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방지를 통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산의 등록, 등록재산의 공개, 선물신고,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는 당사자의 등록, 신고, 재산의 매각 및 신탁, 심사 청구, 신청 등 사전적·자율적 방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세금 체납에 관한 사항 등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이나 비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는 공직자로서의 신분 또는 직위와 관계없이 일반 국민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고, 단순히 정보제공적 기능을 넘어 사후제재적 성격의 불이익한 행정상 조치에 해당하는 바,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

는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상의 공직자윤리 제도와도 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¹⁾

또한, 인사혁신처는 세금 체납사실에 관한 자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자료 제공 이후 세금 완납 사실 등 체납 관련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직윤리 확립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별도의 법체계 하에서 독자적인 입법 목적을 가지고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병무청을 소관 기관으로 하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개별법을 신설하여 독자적인 법체계 하에서 세무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으

1)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제3호는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해 허위등록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법상 재산등록과 공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함.

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입법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제도의 실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공직윤리의 확립 등 공익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외에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의 폭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개 대상의 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2)에 따른 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세금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사실(체납액·압류·압류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사실을 말함) 등을 관보·공보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매년 공개하도록 하되,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는 공개되는 체납 사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안 제10조의3제1항),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자와 그 배우자 등에 한정하고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체납액의 규모나 체납 기간, 납세의무 이행 여부 등에 무관하게 일정한 체납 사실이 있었던 경우 해당 사실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체납액이나 체납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 등 기준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공개 대상이 되는 세금 체납 사실의 범위를 알기 어려움.

또한, 개정안은 체납 사실의 공개 이전에 체납자 등에 대하여 체납 사실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면서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안 제10조의3제2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④ (생략)

이는 체납 사실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당사자의 소명이나 납세의무의 이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공개 대상자 여부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려는 것으로 이해되나, 개정안은 단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행정절차법」 제40조의3³⁾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두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원칙과 절차

3)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7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본다.

⑥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⑦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에서 명확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개별법상 공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세금 체납에 관한 사항의 공개가 제재적 공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윤리의 확립 등 공익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 외에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규제의 폭과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 규정을 통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세금 체납 사실이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은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은⁵⁾

4) 「국세징수법」

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확립은 필요하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 체납 사실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재산등록과 동일한 체계에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사실 공개를 공직윤리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으며,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세조세징수에 관한 법률」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부정기채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 또는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현재도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바, 하나의 체납사실에 대해 체납자명단이 중복적으로 공개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세금 체납사실도 공개되어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국세징수법」과 달리 개정안은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세금 체납 사실을 체납 금액이나 횟수 등과 관련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일 경우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등록의무자가 등록한 재산내역을 활용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가 이루어지며, 다른 법률상의 명단 공개제도의 경우에도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개가 이루어지나,⁶⁾ 세금 체납사실에 관한 자료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개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자료 제공 이후 세금 완납 사실 등 체납 관련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인천광역시에서는 고지서 미수령 등 단순 미인지 사유로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어 내역 공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2

6) 「국세징수법」상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병역공개법」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등

개월 이내에 채납된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